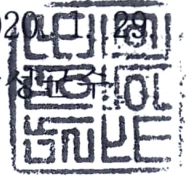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6
----------	------

제출일자 : 2020. 1. 15.

제출자 : 달성군의회



1. 제안이유

급속한 인구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담당 부서 신설 등으로 기구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인력 일부를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927명 → 963명 (증36)
 - 집행기관 정원 : 913명 → 949명 (증36)
 - ※ 의회 정원 변동 없음(14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 예정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 2020. 1. 15. ~ 1. 28.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27” 을 “963”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13” 을 “949” 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927</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963</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913</u> 명	1. ----- : <u>949</u> 명

【 별표 3 】(개정 2020. 03. 0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927963	584611	14	98107	176	55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898934	579606	14	7483	176	55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	27	2	4	7	3
6급이하 계	846882	546573	11	6978	168	52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2020년 기준인건비 통보와 관련 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일반직 공무원 증원 36명(6급 +7, 7급 +14, 8급 +15)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9,356,304천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 년도까지 총 9,356,304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9,356,304천 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계
세 입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지 방 세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의존재원							
세 출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인 건 비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자원 조달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